

범죄경력 기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뉴욕 주 범죄경력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뉴욕 주 규정에 따라, 개인은 형사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거나, 해당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록 없음”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 기록 조회(Personal Record Review)라 칭합니다. 개인은 타인이 범죄경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인 기록 조회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기록 조회 - 공개 허용: 이러한 회신에는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CPL)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가 금지되거나 봉인된 일체의 범죄 기록 정보가 포함됩니다.

- CPL 160.50 기각된 소송
- CPL 160.55 위반(violation/infraction)에 적용될 수 있는 있는 선고
- CPL 160.58 약물 남용 및 이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고
- CPL 720.35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고

개인 기록 조회 - 공개 금지: 이러한 회신에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공개용 또는 봉인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개인 기록 조회 시 요구되는 정보

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공개가 허용되는 개인 기록 조회 회신 또는 공개가 금지되는 개인 기록 조회 회신 중 택일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회신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각 요청에 따라 각각 따로 회신되어야 합니다.

한 명 이상의 성명에 대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개인 기록 조회 신청서 및 지문 카드 상에 해당 가명(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DCJS 로 하여금 추가적인 봉인 기록의 유무 파악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개인 “전과 기록”으로도 알려진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 보고서 또는 “기록 없음” 회신을 여하한 개인 사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법에서 구직 또는 인허가 관련 사항에 지문 채취 방식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직업 또는 인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직 또는 인허가 관련으로 지문 채취 방식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개인이 거쳐야만 하는 개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범죄경력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참조합니다.

뉴욕 주 노동법(Labor Law)은 구직 또는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개인의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항목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서의 직원
- 합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의 직원 및 해당 병원과 제휴되어 있는 의과대학의 직원

- 개인 소유 병원의 직원

또한, 뉴욕 주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범죄자의 인허가 및 취업을 다루고 있는 교정법(Correction Law) 제 23-A 조의 사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뉴욕 주 거주 기간 동안의 기록 조회 요청

1. 지문 채취 일정을 예약하기 위하여 MorphoTrust USA 에 1-877-472-6915(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거나 웹 사이트 www.Identogo.com 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뉴욕 주는 MorphoTrust USA 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 지문 채취 일정을 예약하기 위한 유선 통화 시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a. 기록 조회 ORI 번호: NYDCJSPRY
 - b. 개인 기록 조회 유형: 공개 금지 또는 공개 허용
 - c. 요청 당사자 대신 변호인에게 회신할 것인지 여부
3. 개인은 지문 채취 일정에 출석하는 즉시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a. 두 가지 유형의 신원확인(허용 가능한 형식에 대한 정보는 Morpho Trust USA 웹 사이트 또는 Morpho Trust USA 콜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및

- b. 지문 채취 이행 수수료 납부: \$59.95 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개인 수표 또는 회사 수표, 보증 수표, 은행 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MorphoTrust USA”로 우편환을 송금합니다

요청서 제출 이후 참고사항

개인 MorphoTrust USA 에 1-877-472-6915(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여 본인의 처리된 지문을 DCJS 에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CJS 는 개인의 지문을 수령한 지 7~10 영업일 이내에 미국 우편시스템(U.S. mail)을 이용하여 개인 기록 조회에 대한 회신을 송부합니다. DCJS 에서 직접 회신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신에는 지문이 취업 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에 따라 제출된 시점의 범죄경력 정보, 민간 정보 또는 DCJS 에 기록된 범죄경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회신 사항 없음”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신에는 보고된 여하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양식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이외 지역의 거주 기간 동안의 기록 조회 요청

1. DCJS 기록 조회팀(Record Review Unit)에 다음의 주소로 연락을 취하여 최신 기록 조회 신청 패킷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이메일: **RecordReview@dcjs.ny.gov**. 해당 신청 패킷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주소지를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정확한 우편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패킷은 이메일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또는

- b. 보통우편:

Record Review Unit
Office of Criminal Justice Operations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Albany, New York 12210

- 2. “MorphoTrust USA 카드 스캔 지문 채취 서비스 - 형사사법국 기록 조회 프로그램 뉴욕 주 분과(MorphoTrust USA Cardscan Fingerprinting Services – 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Record Review Program) 요청서” 신청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공개 금지 또는 공개 허용의 개인 기록 조회 유형을 선택합니다.
- 3. 동봉된 지문 카드에 지문을 찍고, 해당 카드에 인구통계 정보를 기입합니다. **제공된 목적으로만 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카드를 접지 않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변호인에게 기록 조회 회신이 송부될 수 있도록 신청서 상에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 4.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 및 지문 카드를 \$59.95의 수수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개인 수표 또는 회사 수표, 보증 수표, 은행 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다음의 주소로 “MorphoTrust USA”로 우편환을 송금합니다.

MorphoTrust USA
New York Card Scan Department
3051 Hollis Drive, Suite 310
Springfield, IL 62704

요청서 제출 이후 참고사항

개인은 MorphoTrust USA 에 수신자 부담 전화 1-877-472-6915 로 전화하여 본인의 처리된 지문을 DCJS 에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CJS 는 개인의 지문을 수령한 지 7~10 영업일 이내에 미국 우편시스템 을 이용하여 개인 기록 조회에 대한 회신을 송부합니다. DCJS 에서 직접 회신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신에는 지문이 취업 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에 따라 제출된 시점의 범죄경력 정보, 민간 정보 또는 DCJS 에 기록된 범죄경력 없음 을 나타내는 “회신 사항 없음”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신에는 보고된 여하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양식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회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문 채취 절차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다음의 주소로 DCJS 에 기록 조회 수수료 면제(Record Review Fee Waiver) 신청 패킷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RecordReview@dcjs.ny.gov. 해당 신청 패킷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주소지를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정확한 우편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패킷은 이메일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또는

보통우편:

Record Review Unit
Office of Criminal Justice Operations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Albany, New York 12210

1. 기록 조회 수수료 면제 패킷의 작성을 완료하여 **DCJS** 기록 조회팀(상기 주소)으로 회신하고 공개 금지 또는 공개 허용의 개인 기록 조회 유형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기록 조회 수수료 면제 신청서.
 - b. 처리된 지문 카드: 동봉된 지문 카드에 지문을 찍고, 해당 카드에 인구통계 정보를 기입합니다. **제공된 목적으로만 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카드를 접지 않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변호인에게 기록 조회 회신이 송부될 수 있도록 신청서 상에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 c. 현행 공공 보조 혜택 카드 복사본과 같은 수수료 면제 요청을 뒷받침하는 서류, 또는 활용 가능한 자산을 기재한 재무제표의 공증본 및 현재 수입 및 해당 재무제표가 진실되며 정확함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증명서.
3. **DCJS** 직원은 기록 조회 수수료 면제 요청이 승인된 이후에 지문 카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요청서 제출 이후 참고사항

DCJS 에 기록 조회 수수료 면제 요청서를 송부한 이후 회신이 있기까지 최소한 **7~10** 영업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회신은 미국 우편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됩니다.

회신에는 지문이 취업 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에 따라 제출된 시점의 범죄경력 정보, 민간 정보 또는 **DCJS** 에 기록된 범죄경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회신 사항 없음”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신에는 보고된 여하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양식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상의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은?

범죄경력 기록 정보는 사법기관, 경찰서, 법원, 보호관찰부 및 교정 및 지역사회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ors)가 **DCJS** 에

제공합니다. 범죄경력 기록은 보통 “전과 기록”이라고도 칭합니다.

DCJS 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 범죄경력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도록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CJS 기록 조회팀이 해당 이의제기 절차를 처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 또는 범죄경력 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의 주소로 해당 팀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메일: RecordReview@dcjs.ny.gov

또는

보통우편:

Record Review Unit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Albany, New York 12210

범죄경력 기록과 관련된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다음의 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 **체포 정보:** 체포 변경, 체포일 또는 범죄일과 같은 체포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면 개인은 체포를 이행한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DCJS 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DCJS 가 해당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갱신하려면 해당 기관은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분 정보:** 처분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처분 정보의 생략사항을 반영하려면, 개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처분의 증명필 사본(certified copy)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개인은 DCJS 에 해당 처분의 증명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 상에 양각 압인을 날인하지 않은 복사본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봉인되지 아니한 체포 및/또는 유죄 선고 정보:** 체포 또는 유죄의 선고가 봉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연락을 취하여 봉인 명령의 증명필 사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개인은 DCJS 에 해당 봉인 명령의 증명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 상에 양각 압인을 날인하지 않은 복사본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뉴욕 주법에서는 성인(16 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으로 정의됨)의 경우 체포 또는 유죄 선고 기록의 말소(삭제)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기각 또는 무죄선고와 같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종결에 따른 체포와 관련된 유죄 선고 또는 기록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봉인한다는 것은 범죄경력 기록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말하나, 제한된 상황에서 봉인된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안담당관/경찰관 구직 신청자에 대한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경력 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 총기 소지 면허 신청자에 대한 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 법원 명령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
-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을 요청하는 개인에 회신하는 경우 변호인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죄경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봉인 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개가 금지된(봉인된) 기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장애 사항에 대한 경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경감 증명서(certificate of relief)는 법원 또는 뉴욕 주 교정 및 지역사회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자들이 취업의 특정 유형 및/또는 특정 인허가 사항을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을 감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경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들은 본인의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연락을 취하거나, DOCCS 웹 사이트 www.doccs.ny.gov 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행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선행증(certificate of good conduct)은 DOCCS 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2 건 이상의 중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자들에게 부과된 취업 및 인허가에 대한 특정 제약사항을 감면하여 주며,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선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들은 DOCCS 웹 사이트 www.doccs.ny.gov 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뉴욕 주에서 10 여 년 전에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디. 해당 선고가 말소되도록 하려면?

뉴욕 주법에서는 성인(16 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으로 정의됨)의 경우 체포 또는 유죄 선고 기록의 말소(삭제)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기각 또는 무죄선고와 같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종결에 따른 체포와 관련된 유죄 선고 또는 기록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봉인한다는 것은 범죄경력 기록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말하나, 제한된 상황에서 봉인된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안담당관/경찰관 구직 신청자에 대한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경력 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 총기 소지 면허 신청자에 대한 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 법원 명령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

-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요청하는 개인에 회신하는 경우 변호인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죄경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개가 금지된(봉인된) 기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에 대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의 신청은 불가하며, 변호인만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죄경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DCJS 가 범죄 신원 조회를 실시합니까?

실시합니다. DCJS 는 취업 및 인허가 목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체가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요청하거나, 변호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CJS 가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 기록 정보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정 접근 권한을 지닌 주체에게만 공개되거나, 또는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행정법(Executive Law)은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특별히 지문 채취 방식으로 범죄경력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주(州)법, 연방법, 또는 뉴욕 주의 마을, 타운,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방법이 실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취업/인허가 지원자에 대하여 지문 채취 방식의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 신원 조회에 대한 DCJS 의 표준 절차 수수료는 \$75 입니다.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 신원 조회에 대한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표준 절차 수수료는 \$14.75 입니다.

기관이 MorphoTrust USA 를 이용하여 DCJS 에 지문을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을 MorphoTrust USA 에 안내한 해당 기관에 현행 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 신원조회용 지문 카드가 DCJS 에 제출된 이후, 해당 조회를 요청한 기관에 결과가 송부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전자 문서 형태로 DCJS 에 제공되는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경력 신원조회는 보통 수령 후 2 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5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